

1. 개정이유

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,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848호, 2023. 12. 26. 공포, 2024. 6. 27. 시행)됨에 따라,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·시기 및 신고센터 설치·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(안 제6조의2)

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, 조합은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일시·장소 통지
나. 신고센터 설치·운영기준 등(안 제23조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,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 등에게 알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합동설명회) ①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합동설명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3조(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등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구성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② 신고센터는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대상 행위 내용,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신고서

내용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등에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)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 구성·운영 및 신고서의 작성·제출·처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합동설명회) ①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그 밖에 합동설명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3조(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)</u> <u>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등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구성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</u>

공무원으로 한다.

② 신고센터는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대상 행위 내용,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,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등에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)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 구성·운영 및 신고서의 작성·제출·처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